

	<h1>보도자료</h1>			
	보도	2022. 10. 5(수) 조간	배포	
담당부서	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	문의	이근영 부장(02-3774-8690) 안일찬 팀장(02-3774-8700)	
	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		이충연 부장(02-3774-9700) 이찬호 팀장(02-3774-9710)	

제목 :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

1. 개요

- 한국거래소(이사장 손병두)는 '22.9.30일 개최된 『제3차 금융규제 혁신회의*』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,
 - * 금융위 보도자료(「제3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개최」'22.9.30) 참조
 -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장폐지 결정이 이루어지고,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 정비 예정
 - ※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회복을 위한 **국정과제** 중 하나로, 「주식 상장 폐지요건 정비」 방안을 전문가·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마련

2.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 (유 : 유가, 코 : 코스닥)

1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

◆ 재무요건 관련 상폐사유 발생기업에 대해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기업 계속성,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 결정

- (현 황)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 진행

- 기업의 회생가능성,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*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 적용

* 예) 글로벌 경기침체, 코로나19 등에 따른 여행·관광산업 수요급락

□ (개 선) 재무관련 형식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(유 코)

-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,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 심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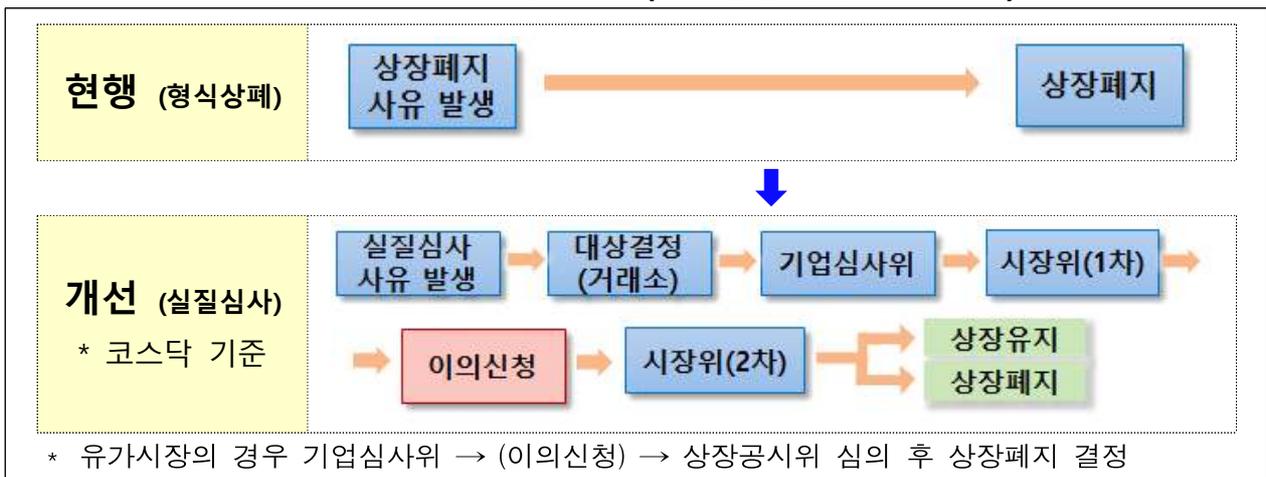
※ 단, '자본전액잠식'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

【 (각 시장별) 실질심사 전환대상인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】

대 상 사 유		현 행	개 선
유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% 이상 •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	형식 상장폐지	실질심사 전환
코스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% 이상 •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•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• 2회 연속 자기자본 50% 초과 세전손실 발생* 		

*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,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

【 상장폐지 절차 개선 내역 (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) 】



2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

◆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상폐사유 해소 및 정상화 유도

□ (현 행)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외에도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기간 부여시 사유해소 노력이 가능함에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

① (정기보고서 미제출*) 부득이한 사정(예: 해외 자회사 실사 지연 등)으로 제출기한을 도파하는 기업 등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 필요

* 사업보고서 미제출·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(유/코), 2년간 3회 정기보고서 미제출(코)

② (거래량 미달) 기업의 존속능력과 직접적 연관성은 낮은 사유로서,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등 개선기회 부여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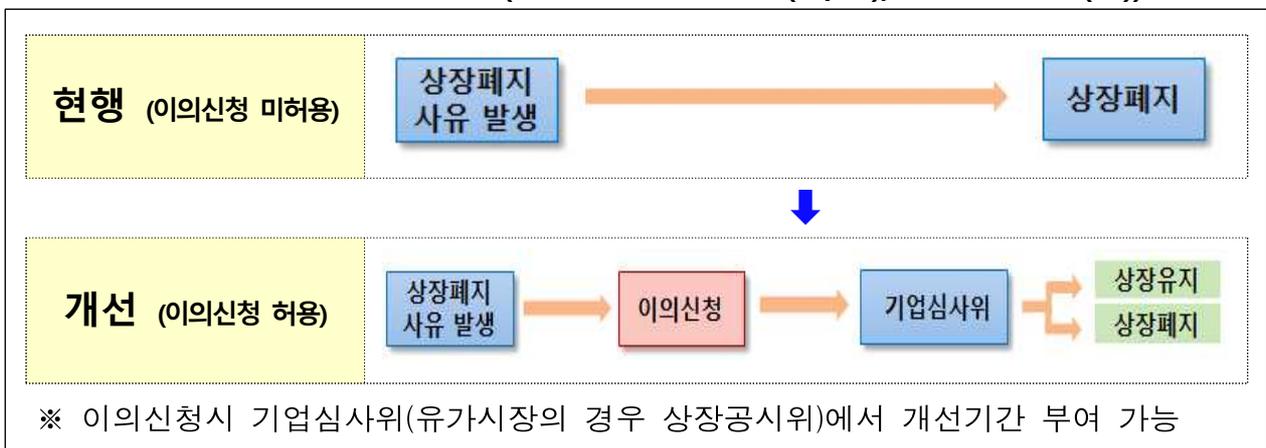
□ (개 선) 정기보고서 미제출(유 코) 및 거래량 미달(코)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 부여

【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 사유 (요약) 】

대 상 사 유		현 행	개 선
유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보고서 미제출 •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	형식 상장폐지 (이의신청 불가)	형식 상장폐지 (이의신청 허용)
코스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보고서 미제출 •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•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• 2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%에 미달* 		

* 유가의 경우 거래량 미달에 대해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 허용

【 상장폐지 절차 개선 내역(정기보고서 미제출(유/코), 거래량 미달(코)) 】



3 기타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

◆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요건 폐지, 투자자 보호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요건 합리화

가. 他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가능한 요건 폐지

① (주가 미달 유) '주가 미달'(액면가의 20% 미만) 요건 삭제

→ '시가총액 미달' 요건에 의해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 퇴출 가능

② (5년 연속 영업손실 코) 영업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상장폐지 제도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'5년 연속 영업손실'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

※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도 폐지하되,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년 영업손실 발생시 '투자주의 환기종목'으로 지정

→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의 경우 '자본잠식' 요건을 적용하여 퇴출 가능

③ (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코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상장폐지의 연계가 과도한 측면을 고려하여 '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'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

※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는 존속

→ '외부감사인 감사의견' 요건으로 경영투명성이 낮은 기업 퇴출 가능

나.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상장기업 부담이 높은 상폐요건 개선

① (상폐요건 적용기준 변경 코)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 → 年 단위로 변경

※ 다만,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 발생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

② (실질심사 제외 근거 마련 **코**) 실질심사 사유(횡령 등) 확인 시점에서 해당사유가 발생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→ 심사대상 제외 가능

【 상장폐지 요건 및 적용기준 변경 (요약) 】

대 상 사 유	현 행	개 선
• 추가미달 유	형식 상장폐지	폐지
•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코	실질심사	폐지 (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으로 대체)
•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코		
• 반기단위 자본잠식 등 점검 코	형식 상장폐지	폐지(年 단위로만 점검) (반기 자본잠식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으로 대체)
• 실질심사 사유 발생 후 5년 경과 코	실질심사	대상 제외 가능

3. 금융규제혁신회의 주요 논의내용

- 『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』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
 - 실질심사 확대에 따라 퇴출절차 장기화 등 우려 존재
 - 실질심사 확대보다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의 조정 필요
 - ☞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兩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동 제도 운영 예정

4. 향후 계획

-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(10~11월)

* 코넥스시장도 해당되는 내용은 동시에 개정 추진 예정

※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홈페이지(<http://www.krx.co.kr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